

■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부과한다.

나.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거나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위원회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만원)
가.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	법 제70조 제1항제1호	1,500
나.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경우	법 제70조 제2항제1호	500
다.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70조 제2항제2호	500
라.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	법 제70조 제1항제2호	1,500

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 마.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 제2항제3호	500
바. 법 제53조 또는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	법 제70조 제2항제4호	500
사.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 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 우	법 제70조 제2항제5호	300